

2000 농업총조사 시험조사

조 사 지 침 서

1999. 10

B31343

통 계 청

차 례

I. 2000 농·어업총조사 개요	3
1. 조사목적	5
2. 조사연혁	5
3. 법적근거	5
4. 조사기간	5
5. 조사체계	5
6. 조사대상	5
II. 시험조사 계획	7
1.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9
2. 조사규모 및 지역	9
3. 조사체계	10
4. 조사인력	10
5. 조사방법	10
6. 조사항목	10
7. 단계별 수행업무	13
III. 조사대상(농가정의)	15
IV. 조사원 수행사항	21
V. 준비조사	25
1. 준비조사 목적	27
2.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작성	27
VI. 본조사	31
1. 조사원 수칙	33
2. 조사표 기입시 유의사항	34

3. 조사표 기입요령	36
-------------------	----

일반적인 사항	36
---------	----

<table border="1"><tr><td>I</td><td>농가인구</td></tr></table>	I	농가인구	37
I	농가인구		

<table border="1"><tr><td>II</td><td>농경지</td></tr></table>	II	농경지	49
II	농경지		

<table border="1"><tr><td>III</td><td>작물</td></tr></table>	III	작물	60
III	작물		

<table border="1"><tr><td>IV</td><td>가축, 가금</td></tr></table>	IV	가축, 가금	66
IV	가축, 가금		

<table border="1"><tr><td>V</td><td>농기계</td></tr></table>	V	농기계	68
V	농기계		

<table border="1"><tr><td>VI</td><td>문화용품 및 시설</td></tr></table>	VI	문화용품 및 시설	69
VI	문화용품 및 시설		

<table border="1"><tr><td>VII</td><td>영농형태별</td></tr></table>	VII	영농형태별	70
VII	영농형태별		

<table border="1"><tr><td>VIII</td><td>농축산물 판매</td></tr></table>	VIII	농축산물 판매	71
VIII	농축산물 판매		

<table border="1"><tr><td>IX</td><td>향후 영농계획</td></tr></table>	IX	향후 영농계획	73
IX	향후 영농계획		

VII. 조사표류 검토, 보완 및 제출	75
-----------------------------	----

1. 조사표의 검토 및 보완	77
-----------------------	----

2. 조사표류 제출	80
------------------	----

☐ 부록	83
-----------------------------------	----

I . 2000 농 · 어업총조사 개요

I. 2000 농·어업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농·어가 및 농·어업경영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 농·어업정책 수립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 읍·면 단위까지의 지역통계 생산
- 농·어업관련 학술연구·분석·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농수산통계 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국제간 자료교류 및 분석

2. 조사연혁

- 1961년에 UN/FAO의 1960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가(어업 ; 1970년)
- 1990년까지 매10년마다 4차(3차)에 걸쳐 서기년도 끝자리가 “0”인해에 실시
- 1995년에는 대내외적인 농·어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출범에 따라 특별히 총조사 규모로 실시
- 1998.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2000세계농업센서스 : 각국 여건에 따라 1996~2004년중에 각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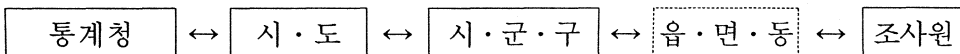
3. 법적근거 : 지정통계 제10141호 및 제10146호

4.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농업 및 해면어업 12월 1일, 내수면 어업 11월 1일
- 조사대상 기간 : 전년 12월 1일~당해년 11월 30일(1년간)

※ 2000 농·어업총조사 : 2001년 3월중 본조사 실시예정

5. 조사체계



※ 협조기관 : 통계사무소 및 출장소

6.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농가 및 어업가구

II. 시험조사 계획

II. 시험조사 계획

중점 추진사항

- ◆ 기존 조사항목의 타당성 및 현실성 검토
- ◆ 조사표, 조사지침 등의 개선의견 수집
- ◆ 농·어업조사구의 동시 활용방안 모색
- ◆ 현지 조사원 질적 향상방안 모색
- ◆ 2000농·어업총조사의 추진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 ◆ 기타 농·어업총조사 추진능력 배양

1.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 조사 기준시점 : 1999년 10월 1일 0시현재
- 준비조사 : 10월 11일 ~ 10월 13일(3일간)
- 본조사 : 10월 14일 ~ 10월 27일(12일간)

2. 조사규모 및 지역

- 조사대상 : '95농업 및 어업총조사시 설정한 농·어업조사구
- 조사규모 : 94개 농업 및 어업조사구(약 4,500여 농·어가)
- 조사지역
 - 농촌지역(50개 조사구)
 - ‘95농업조사구내 농가수 비율이 90%이상이고, 농가수가 60호 이내인 지역

- 어촌지역(30개 조사구)

‘95어업조사구내 어가수 비율이 70%이상이고, 어가수가 40호 이내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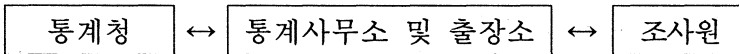
- 도·농복합지역(14개 조사구)

‘95농업조사구내 농가수 비율이 50~60%이고, 농가수가 60호 이내인 지역

○ 조사구 배정 : 사무소(출장소)별 2개 조사구

※ 어촌지역의 어업조사구에서는 조사구내의 농가 및 어가를 동시에 조사

3. 조사체계



4. 조사인력 : 총 94명(조사구당 1명)

○ 임시채용 조사원 : 47명(채용기간 : 10월4일~10월27일 중 16일)

○ 조사공무원 : 사무소(출장소)별 각 1명(총 47명)

※ 지도공무원 : 사무소 및 출장소별로 2명 이상의 지도원 지정

5. 조사방법

○ 조사구별로 지정된 조사원이 해당 조사구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농·어가 여부를 확인(준비조사)

○ 확인된 농·어가를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본조사)

6. 조사항목

가. 농업총조사 : 총 63개 항목

- 「가구원(농가인구)」에 관한 사항(11개 항목)
 - ① 가구원 성명 ② 경영주와의 관계 ③ 연령 ④ 성별 ⑤ 혼인상태 ⑥ 영농
승계자 ⑦ 교육정도 ⑧ 농사종사기간 ⑨ 농사이외의 일 ⑩ 주종사분야
⑪ 농사 이외의 일중 주종사 분야
- 「농경지」에 관한 사항(10개 항목)
 - ① 논면적(소유관계, 차용처, 이모작논, 수리상태, 경지정리상태) ② 논 농사
위탁상황 ③ 밭면적(소유관계, 차용처) ④ 수원지 면적 ⑤ 과수원면적
- 「농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4개 항목)
 - ① 수확면적(논벼 등 21종) ② 수확여부(들깨등 15종) ③ 시설면적(비닐
하우스(일시/영구), 유리온실, 기타시설) ④ 시설내 작물별 면적 (토마토 등
19종)
- 「가축·가금」에 관한 사항(5개 항목)
 - ① 한육우(총마리수, 암·수컷) ② 젓소 총마리수 ③ 돼지 총마리수 ④ 닭
(총마리수, 산란용, 육계용) ⑤ 기타가축 마리수(젓산양 등 13종)
- 「농기계 및 기구」에 관한 사항(12개 항목)
 -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SS분무기 ④ 정미기 ⑤ 콤바인 ⑥ 바인더 ⑦ 사료
(절단, 예취, 분쇄기) ⑧ 관리기 ⑨ 건조기 ⑩ 양수기 ⑪ 이앙기 ⑫ 운반용
트럭
- 「문화용품 및 시설」에 관한 사항(6개 항목)
 - ① 텔레비전 ② 컴퓨터 ③ 비디오 ④ 승용차 ⑤ 입식부엌 ⑥ 수세식 화장실
- 「영농형태」에 관한 사항(9개 항목)
 - ① 논벼 ② 과수 ③ 채소 ④ 특용작물 ⑤ 화훼 ⑥ 전작 ⑦ 축산 ⑧ 양잠
⑨ 기타
-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3개 항목)
 - ① 농축산물 판매금액 ②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 ③ 판매방법

○ 「향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3개 항목)

- ① 경영주 지속기간 ② 향후 5년 이내 경지규모 변동계획 ③ 향후 5년 이내 영농형태 전환계획

나. 어업총조사 【해면어업 : 총 48개 항목】

○ 「가구원(어가인구)」에 관한 사항(15개 항목)

- ① 가구원 성명 ② 경영주와의 관계 ③ 연령 ④ 성별 ⑤ 혼인상태 ⑥ 학력
⑦ 주종사분야 ⑧ 어업종사기간 ⑨ 어업종사형태 ⑩ 주종사분야 ⑪ 어업이
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 ⑫ 어업 이외의 일중 주종사분야 ⑬ 겸업어가 ⑭
겸업가구의 주종사 분야 ⑮ 주된 어업형태

○ 「어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2개 항목)

- ①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 ② 종사한 어업의 종류

○ 「어선」에 관한 사항(8개 항목)

- ① 어선명 ② 어업의 종류 ③ 어선의 종류 ④ 선박의 재질 ⑤ 선령 ⑥ 톤수
⑦ 마력수 ⑧ 선원수

○ 「양식장 시설규모」에 관한 사항(5개 항목)

- ① 패류 ② 해조류 ③ 어류 ④ 갑각류 ⑤ 기타 수산동물

○ 「어업활동 및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3개 항목)

- ① 최성어기의 어업종사자 수 ② 조업수역 ③ 해상작업 종사일 수

○ 「문화용품 가재보유」에 관한 사항(15개 항목)

- ① 신문 ② 에어컨 ③ 피아노 ④ 비디오 ⑤ 전축(오디오) ⑥ 전자렌지
⑦ 진공청소기 ⑧ 싱크대 ⑨ 개인용 컴퓨터 ⑩ FAX ⑪ 승용차 ⑫ 운반
용트럭 ⑬ 오토바이 ⑭ 보일러시설 ⑮ 수도시설

7. 단계별 수행업무

업무내용	일 정	세부수행사항	비 고
가. 조사지침, 조사표류 유인·배부	10.2	○ 조사지침(농업, 어업) ○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 조사표(농업, 어업) ○ 조사 의견 설문서	농수산통계과
나. 시험조사 추진 관련 교육	9.29~10.1	○ 장소 : 통계청 ○ 대상 : 사회조사과장 및 농 수산 탐장	농 수 산 통 계 과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다. 시험조사구 선정 및 조사담당공무원 지정	10.1~10.5	○ 사무소/출장소당 2개조사구를 유의 선정 ○ 조사구별 조사공무원 및 지 도원 지정	농 수 산 통 계 과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라. 조사원 선발· 채용	10.1~10.5	○ 각 사무소·출장소별 1인 ○ 채용방법은 세부실시계획 참조 ○ 채용결과는 각 사무소에서 취합 하여 10.5까지 보고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마. 조사원 교육	10.4~10.9	○ 각 사무소·출장소별로 실시 ○ 교관 : 농수산팀장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바. 준비조사	10.11~10.13	○ 조사구내 농·어가 확인 ○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작성	조사원
사. 본조사	10.14~10.27	○ 조사구 농가 방문, 조사	조사원
아. 조사원 간담회	10.20~10.27	○ 현지 지도방문시 조사원 및 지도원 면담	농수산통계과
자. 조사표류 제출	10.28~11.5	○ 조사표, 조사구 요도 및 가 구일람표 등 일체를 농수산 통계과에 제출	각 사무소 및 출장소
차. 조사의견 수집·검토	10.28~11.5	○ 현지 조사자 의견 수집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농수산 통계과
카. 조사표 검토 및 문제점 도출	11.6~11.20	○ 조사표 기재내용 검토 및 오류원인 분석	농수산통계과
타. 조사결과 분석	11.20~11.30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 추진방향 등 설정	농수산통계과

Ⅲ. 조 사 대 상

Ⅲ. 조사대상

농가 정의

농가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i) 조사시점 현재 경지(논, 밭, 수원지) 10a(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ii)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

iii) 위의 각호별 규모이외의 가구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구

- 대가축(한·육우, 젖소, 고기소)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중가축(돼지, 면양, 산양등)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소가축(토끼 등), 가금(닭, 오리, 칠면조등) 4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꿀벌 5군 이상 치는 가구

☐ 조사시점 현재 경지 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조사시점 : 1999년 10월 1일 0시 현재를 말한다.

○ 경지란 논, 밭, 수원지를 말한다.

- 경지 10a 이상은 논, 밭, 수원지 어느 한가지만 300평 이상인 경우는 물론 논, 밭, 수원지를 합하여 300평 이상의 경우도 농가에 해당된다.
- 수원지는 과수, 뽕나무, 묘목, 관상수목등 나무를 심은 밭으로서 반드시 30평 이상 집단적으로 재배한 것만 조사하며, 주택 근처나 산에 산재 재배된 수목은 제외한다.

- 경지는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형태에 의하여 논, 밭, 수원지로 구분하고 면적도 실제 이용면적을 조사한다.
- 산에 밤나무, 뽕나무 등이 재배된 경우와 밭에 밤과 같은 임산물의 수확을 위해 농작물을 전혀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경지에서 제외한다.

○ 직접 경작하는 가구란?

- 토지 소유에 상관없이 논, 밭, 수원지를 관리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를 말한다.
- 논, 밭, 수원지를 위탁받아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면 농가에 해당된다.
-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비료, 종자, 농약 등의 자재를 보조하고 그 수확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면 농가에 해당된다. 단, 노동력만 제공한 경우는 농가에서 제외된다.
- 위탁영농회사 등에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작업등을 위탁하여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경지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면 농가에 해당된다.
- 올해 농사는 짓지 않았으나, 내년 농사를 위해 10월1일 이전에 경지를 매입, 또는 빌린 경우도 조사에 포함한다.

□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40만원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

- 판매 금액이란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 대금 전액을 말한다.
- 매매 계약이 끝난 것이지만 대금은 아직 받지 않은 외상 판매도 판매 금액에 포함한다.

- 전년에 이미 수확하고 저장해 두었던 농산물(쌀, 사과 등)을 지난 1년간('98.10~'99.9)에 판매한 경우도 판매금액에 포함한다.
-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품을 판매한 경우 가공 전의 농산물 평가액만을 판매금액으로 포함한다.
- 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판매한 경우는 요리의 원료로 사용된 농산물의 가격을 농산물 판매금액으로 조사한다.
- 자가수확한 농산물과 부산물을 물물교환 하거나 임차료, 부채 등을 현물로 지불한 경우에도 판매금액으로 환산 포함한다. 단, 친척에게 증여, 외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준 농산물은 판매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농가가 회사 등으로부터 가축, 사료 등의 제공을 받아 가축을 사육, 관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판매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상업을 목적으로 가축, 묘목 등을 단기간 보관 또는 관리하였다가 판매한 경우는 농산물 판매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대부경지에 대한 임대료로 받은 농·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위의 각호 규모 이외에 다음의 가축을 기르고 있으면 농가로 조사한다.

○ 가축구분에 의한 농가

- 대가축 : 한우, 젓소, 고기소 1마리 이상
- 중가축 : 돼지, 면양, 산양(염소 포함), 사슴, 여우 멍크등 3마리 이상
- 소가축(토끼등) 및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등)40마리 이상
- 꿀벌 5군 이상 치는 가구

- 경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가축과 남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 공동출자로 구입한 경우는 조사기준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를 농가로 조사하며, 출자만 하고 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는 농가로 보지 않는다.
- 대가축의 경우는 어느 것이나 1마리 이상 기르면 농가이고 중가축은 1가지 또는 2가지 이상 합하여 3마리 이상, 소가축은 1가지 또는 2가지 이상 합하여 40마리 이상 기르면 농가에 해당된다.

단, 개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꿀벌은 조사일 현재 5군(통) 이상이면 농가에 해당되고 남의 집에 잠시 맡겨 놓은 것도 포함된다.

IV. 조사원 수행사항

IV. 조사원 수행사항

1. 조사원 교육참석 : 10. 4 ~ 10. 9중 1일

- 교육장소 :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

※ 조사지침을 한번의 교육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 받은 내용을 복습한다.

2. 조사용품 수령

- 농업총조사 조사표(A4, A3), 어업총조사 조사표(A4), 조사구역도, 가구일람표, 농업총조사 지침서, 어업총조사 지침서, 조사표 표지(A4, A3), 조사원증, 연필, 지우개

3. 준비조사 실시 : 10. 11 ~ 10. 13

- 조사구 경계 및 거처 확인
- 농가 및 어가의 확인
- 가구 일련번호표(스티커) 부착
-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보완·작성

4. 본조사 실시 : 10. 14 ~ 10. 27

- 농·어가방문 및 면접·타계식조사

※ 농업총조사는 2종류의 조사표를 격일제로 사용

- 조사표 검토 및 착오사항 보완

- 조사표류 제출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조사표, 조사원증, 조사원 업무일지, 농가별 조사 항목 현황표, 조사지침서, 기타 관련서류 일체

5. 조사원 업무일지 작성

- 조사기간 중 매일매일의 업무수행 사항을 조사원 업무일지(양식 : 부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매 3일마다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보고한다.

6.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작성

- 조사완료 후 농·어가별로 조사된 항목의 현황표(양식 : 부록)를 작성하여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제출한다.

V. 준 비 조 사

V. 준비조사

1. 준비조사 목적

- 표본조사구의 경계 확인 및 조사순서의 결정(조사구요도 작성)으로 대상농가 및 어가의 누락·중복을 방지한다.
- 표본조사구내 가구일람표를 작성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농가, 어가, 비농·어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표 작성 대상가구를 확정한다.

2.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작성

- 조사구 경계 및 거처를 확인한다.

- 조사원별로 담당 조사구의 '95 농·어업총조사시 조사구 요도 및 가구 일람표를 지참하고 현지를 방문한다.
- 조사구 요도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95년 농·어업총조사 이후 변동 또는 누락된 도로, 지형지물, 거처 등을 확인한다.

※ 기존 조사구 요도로 조사구의 경계구분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출장소의 관련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농가, 어가 여부를 확인한다.

- '95농·어업총조사시의 가구일람표 및 조사구 요도를 참고하고, 조사구내 리·통장, 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구별 농·어업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농가 및 어가에 해당하는 가구를 확인한다.
- 농가 및 어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구분의 앞란(농가는 경지 300평 이상, 어가는 동력선 사용)부터 해당하는 순서로 한 칸에만 "○" 표 한다.

-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를 부착한다.

- 농·어가로 확인 된 가구의 대문 또는 주 출입문 상단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조사 대상 농·어가임을 표시한다.

○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를 보완·작성한다.

- 앞에서 확인한 조사구의 경계 및 거쳐중 변동된 사항을 현지에서 기존 조사구 요도에 우선 보완한다.
- 현지에서 기존 조사구 요도에 보완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요도 및 가구 일람표를 작성한다.

가구일람표 보완·작성

- 집(거처)이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거쳐번호부터 비고란까지 적색으로 <=> 표시하고, 집을 새로 지었을 때에는 해당인구주택 조사구의 가구일람표 맨 끝번의 거쳐번호 가구번호에 이어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농가 및 어가 여부를 확인한다.
- 가구가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빈집으로 있을 때는 가구번호부터 비고란까지 적색으로<=>표시한다.
- 기존의 가구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사온 경우에는 가구주 성명부터 농가 및 어가일련번호까지 적색으로<=>표시하고, 새로 이사온 가구는 가구 일람표 맨 끝란에 이어 기존의 거쳐번호, 가구번호, 주소를 이기함과 동시에 가구현황을 조사 기입한다.
- 한 집에(동일거처) 1가구가 살다가 셋 방 등으로 새로운 가구의 전입이 있어 가구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해당 가구일람표 맨 끝란에 거쳐번호의 경우 동일 거쳐 번호를 기입하고 가구번호는 맨 끝번호에 연결하여 부여한다.
- 거처나 가구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비고란에 철거, 신축, 전출, 전입 등의 사유를 기입한다

조사구요도 보완·작성

- 농·어가 확인이 완료되면 우선 가구일람표를 정비하고 농가 및 어가 일련번호 부여한 후 조사구 요도를 보완 작성한다.
- 집(거처)이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거처표시 (□)안에 붉은색으로 ☒표를 하고 집이 새로 발견(신축등)되었을 때에는 신축위치에 □표시를 하고 가구일람표상에 부여한 거처번호를 적어 넣는다.
- 거처표시가 수정·보완되면 가구일람표상에 부여된 농가 및 어가일련번호를 거처(집)번호위에 붉은색으로 농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농가 및 어가 일련번호는 가구일람표상의 농가 및 어가 일련번호와 같아야 한다.
- 어촌지역의 어업조사구에서 한 가구가 어가와 농가로 동시에 해당될 경우 어가일련 번호는 거처(집)번호 위에 부여하고, 농가일련번호는 어가일련번호 오른쪽 옆의 ()표시 내에 부여한다.

Ⅵ. 본 조 사

(※ A3크기의 조사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Ⅵ. 본 조 사

1. 조사원 수칙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요령 교육에 참석하고 준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는등 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 조사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필히 조사하여야 하며 대리조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지도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다른사람으로 교체,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조사일정에 따라 농가나 어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 조사대상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
- 응답자는 가능한 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농가나 어가를 방문 조사할 때는 방문목적과 농·어업총조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공손하게 질문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명랑하게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조사 이외의 다른 질문은 일체하지 말 것이며, 응답자가 조사와 관계없는 화제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에는 요령 있게 화제를 돌려 신속히 조사를 끝내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경영주는 외출하고 남은 가족이 조사내용과 전혀 무관할 때
 - 방문한 가구가 혼사나 상을 당하여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집안이 우환, 싸움등 불유쾌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응답자가 술에 취하여 옳은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응답자가 무조건 답변을 거부할 때

※ 재방문을 요할 때에는 가구일람표의 해당가구 비고란에 부재나 재 방문의 표시를 하였다가 다시 방문하여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조사표 기입시 유의사항

○ 조사표는 우선 연필로 조사 기입하고 조사표상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완전하다고 생각될 때 검정색이나 청색 볼펜으로 깨끗이 기입한다.

○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되 정자로 분명히 나타낸다.

○ 소수로 쓰지 말고 지정된 단위까지 사사오입한다.

<보 기> 3.5→4 3.2→3

○ 숫자기입이 아니고 “○”표하는 경우는 해당번호 중앙에 분명히 표시한다.

<보 기>

틀림

1	2	3	○	4	5
---	---	---	---	---	---

, 바름

1	2	③	4	5
---	---	---	---	---

○ 각 조사항목마다 먼저 해당여부를 묻고 해당되지 않을 때는 조사항목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없다」란에 √표를 하고 √표시가 없는 것만 다시 질문하여 기입한다.

○ 농경지, 목초지 면적 등이 백 만평이 넘어 조사표의 조사단위란을 초과하는 경우, 십만 단위란에 두 자리를 기입한다.

- 조사표에 이미 고정시켜 놓은 단위(평)에 맞도록 조사하여 기입할 것이며 임의로 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보기> 논벼의 수확면적이 1.5정보라고 답변할 때, 또는 열 두마지기로 답변할 때
(1마지기가 200평일 때)

(틀 림)

	없다 √ 표		수확면적					
			십 만	만	천	백	십	평
논 벼		201			1	5	정	보
보 리		202		1	2	마	지	기
맥주보리	√	204						
옥수수(식용)	√	206						

(바 림)

	없다 √ 표		수확면적					
			십 만	만	천	백	십	평
논 벼		201			4	5	0	0
보 리		202			2	4	0	0
맥주보리	√	204						
옥수수(식용)	√	206						

- 조사표 기입도중에는 물론 기입 후에도 전후에 모순이 없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조사하여야 한다.
- 당초 기입한 숫자에 착오가 발견되면 두 줄로 횡선을 긋고 분명하게 정정해야 한다.

3. 조사표 기입요령

일반적인 사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업조사구 번호	농가 일련번호	인구주택 조사구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95 농업총조사시의 분류부호를 기입한다.
- 농업조사구번호 : 지정된 농업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 농가일련번호 : 가구일람표상에 부여된 농가번호와 일치되게 기입한다.
- 인구주택 조사구번호 : '95 인구주택총조사시의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 조사대상 구분

조사대상 구분	
자 급	판 매
1	2

- 조사대상 농가가 자급을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1”, 판매를 주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2”에 “○”표 한다.

● 응답자 전화번호

조 사 자	통계사무소 검토자	응답자 전화번호
성명 (서명)	직 성명	-

- 조사 후 누락된 항목이나 조사된 항목에 대하여 추가 전화 질의할 수 있도록 응답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I	농가인구
---	------

● 가구원수

가 구 원 수				
합 계	15세 이상		15세 미만	
	남	여	남	여

【 묻는법 】

현재 덕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작성요령 】

- 농가인구란 조사기준일(10월 1일) 현재 농가에서 3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3개월은 되지 않았어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사람을 말한다.
- 만 15세 이상과 1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남·여별 인원수를 기입한다.
- 10월 1일 군에서 제대한 아들이 앞으로 계속 3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때 이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된다.
- 본래 이 농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잠시 친척집 방문, 여행, 출장중인 가족이 있을 경우 3개월 미만이면 가구원에 포함하고 3개월 이상인 때에는 제외한다.
 - ※ 가족 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나 보호자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한다.
- 가정부, 고용인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사와 관련된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하고, 농사와 관련 없이 상주하는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농사이외의 일을 위해 고용된 고용인과, 하숙생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가정부, 잣난애, 노인, 여행등 출타중인 가족이 가구원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구원의 합계란은 다음란의 연령별 성별 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 가구원 성명과 경영주와의 관계

가구원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주와의 관계 (부, 모, 처, 장남, 장녀 등으로 기입)	
①	②	
	경 영 주	01
		02

【 묻는법 】

이 책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본의 성명을 경영주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 작성요령 】

○ 경영주 란?

- 세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갖고 농사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농사일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배할 작물의 결정, 비료, 농약의 구입, 인부의 고용, 수확물의 처분등 모든 농사일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는 가구원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에 세대주인 아버지는 군청에 근무하고 실제 농사의 관리는 아들이 주로 할 때 경영주는 아들이 되는 것으로, 즉, 가구원 중에서 연장자라든가, 호주 또는 세대주가 반드시 경영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앞 란 가구원 총수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전 가구원 개개인에 대하여 성명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조사 기입한다
- 경영주와의 관계는 가족인 경우 부, 모, 처 장남, 차남, 장녀, 손자, 손녀 등으로 기입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고용인, 가정부 등으로 기입한다.
- 가급적 경영주이외의 가족은 나이순으로 물어 관계를 조사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가족에 이어 조사한다.
- 가구원이 10명을 넘을 경우 다른 조사표를 오려 붙이고 일련번호를 이어서 기입한다.

● 나 이

나 이 (만 나이)		
③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 width: 50%;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none; width: 50%; height: 20px;"></td> </tr> </table>		

【 묻는법 】

○○는 만으로 나이가 몇 세입니까?

【 작성요령 】

- 전 가구원에 대한 나이를 만으로 조사 기입한다.
- 나이를 만으로 모를 때는 사실상 연령에서 생일이 10월 1일 이후면 2살을 감하고, 1월1일에서 9월30일 사이면 1살을 감하여 기입한다.
- 조사기준일(10월 1일) 기준 첫돌이 안 지난 아기는 0세로 기입한다.
-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99세로 기입한다.

● 성 별

남 여 별	
남자	여자
④	
1	2

【 묻는법 】

○○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작성요령 】

- 전 가구원의 성별을 물어 남자는 1번에 여자는 2번에 “○”표 한다.
- 여기서 조사된 남녀의 수는 앞 가구원의 합계란의 남녀의 수와 일치되어야 한다.

● 혼인 상태

혼 인	
기혼	미혼
⑤	
3	4

【 묻는법 】

○○는 결혼하셨습니다까? 미혼입니까?

【 작성요령 】

-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결혼을 하였다면 3에 “○”표하고 미혼이면 4에 “○”표 한다.

○ 혼인 여부는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 혼인상태를 조사할 때 응답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영농 승계자

영농승계자
⑥
5

【 묻는법 】

댁에서는 이다음 농사를 맡아 살업을 꾸려 나갈 분이 누구입니까?

【 작성요령 】

○ 본 사항은 농가구수가 매년 감소되는 우리 나라의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농촌을 어떤 사람들이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구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현 경영주나 가족중 책임 있는 분에게 물어 해당란에 “○” 표 한다.

○ 영농승계자란

- 나이와 관계없이 가족 중 현 경영주의 뒤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한다.

- 영농승계자는 조사대상 농가의 농업을 승계 할 사람으로 국가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는 영농후계자와는 다르므로 착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구원중 영농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조사한다.

- 객지에 나가있는 영농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도 모두 조사하되 다른 조사표를 이어 붙여 기입한다.
- 경영주는 영농승계자란에 “○” 표 해서는 안 된다.

< 객지에 나가있는 경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⑩				⑪						
		99		1	2	3	4	5	1	2	3	4	5	6	7	...	1	2	3	4	1	2	3	4	5



객지에 나가 있거나
집에 동거하지 않는
영농승계자 성명

【 묻는법 】

객지에 나가 있거나 같이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농사를 맡아 관리
해 나갈 사람은 있습니까?

【 작성요령 】

- 객지에 나가있는 영농승계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 사항인 ①~⑦, ⑩~⑪란을 가구원 조사요령과 같이 조사한다.

● 교육 정도

교 육 정 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대학원	안 다녔음
⑦						
1	2	3	4	5	6	7

【 묻는법 】

○○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작성요령 】

○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교육정도를 물어 해당번호 하나에 “○”표 한다.

○ 재학생, 중퇴자 및 졸업자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 중학교 2학년재학, 중학교 1학년중퇴, 중학교 졸업 ⇒모두 중학교로 조사

○ 구학제는 다음의 현학제로 보아 조사한다.

구 학 제	현 학 제
보통학교, 공민학교	초등학교
고등소학교, 고등보통학교, 고등공민학교	중 학 교
구제중학교	고등학교
구제예과, 전문학교	전문대학

○ 3군 사관학교 졸업생은 대졸에 포함시킨다.

○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는 국내학력에 준하여 표시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재한다.

○ 중학교 졸업 후 군기술사관학교에 입대한 경우 고등학교로 조사

● 농업에 종사한 기간

지난 1년간('98년 10월부터 '99년 9월까지)				
가구원별로 농사일을 한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하나만 ○표)				
없다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⑧				
0	1	2	3	4

【 묻는법 】

○○는 지난 1년간 농사일에 종사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얼마나 됩니까?

【 작성요령 】

-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농사일에 종사기간을 물어서 해당 번호 하나에 “○”표 한다.
- 농사일에의 종사한다는 것은 작물재배는 물론 가축사육, 육묘, 양잠, 꿀벌 등의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종사한다 함은 직접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농사 내용을 알고 현지에서 지시 감독하는 것도 포함된다.
- 도정업, 과일쥬스 생산등 농산물 가공에 속한 경우는 「농사」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 란의 「농사이외의 일」에 해당된다.
- 자기집 농사뿐만 아니라 남의집 농사에 종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 농사에 종사한 기간은 실제로 일한 날짜의 누계(연)일수를 계산하여 조사한다.
- 조사일수 계산에서 「반나절」은 2일을 합하여 1일로 한다.

●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

지난 1년간('98년 10월부터 '99년 9월까지)			
돈별이를 위해 농사이외일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하나만 ○표)			
없다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⑨			
0	1	2	3

【 묻는법 】

○○는 지난 1년간 수입을 얻기 위하여 농사이외 일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 작성요령 】

-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농사이외 일에 종사한 기간을 물어 해당번호 하나에만 “○” 표 한다.
-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수입(돈별이)을 얻기 위하여 농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한 것을 말한다.
- 자기집 일과 남의 집일에 종사한 것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 종사기간은 연간 누계일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없다”에 포함한다.
- 농사 이외의 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일반서비스업 : 이발소, 여인숙, 음식점, 병원, 한의원, 약방, 목공소, 건축업, 제재소, 운송업등
 - 어업 : 바다나 민물에서 고기잡이 양식등
 - 상업 : 상점(구멍가게 포함), 연초소매소, 주류판매소 등
 - 광공업 및 제조업 : 공장, 광산, 채석장, 양조장, 축세제품, 인초, 완초, 기타 섬유제품, 칠기제품 등
 - 관청 및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자 : 공무원, 회사원, 교사 등
- 도정업을 농사에 포함하거나 축산을 농사이외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주종사 분야

지난 1년간 ('98년10월부터 '99년 9월까지)			
년간 가구원별 주종사 분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표 한다.)			
농사	농사이외 일	학생	기타(가사·환자·무직자)
⑩			
1	2	3	4

【 묻는법 】

○○가 지난 1년간 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종사기간이 길었던 것 하나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작성요령 】

- 농업 1번부터 기타 4번까지 하나하나 물어서 주로 종사한 분야에 “○”표 한다
- 만15세 이상 가구원은 어느 한곳에 반드시 “○”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 한사람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구분 표시한다.
 - 종사기간이 긴 쪽에 “○”표 한다.
 - 기간이 비슷할 때는 수입이 많은 쪽에 “○”표한다.
- ⑧번 란의 2, 3, 4와 ⑨번 란의 1, 2, 3에 “○”표가 있을 때에는 ⑩번란 중 농사(1) 또는 농사이외 (2)란에 “○”표 하여야 한다.
- 학생은 ⑧, ⑨번란에 ○표가 있다 할지라도 ⑩번란의 학생(3)란에 “○”표 한다.
- ※ 학생 : 정규학교는 물론 기술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 등도 포함시킨다
- ⑩번란의 기타(4)는 가사, 환자, 무직자 등이다

● 농사이외의 일종 주종사 분야

지난 1년간('98년 10월부터 '99년 9월까지)				
농사 이외의 일종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⑩란에 2에 ○표 있으면 하나만 ○표)				
사무직	생산직	상업	어업	기타
⑪				
1	2	3	4	5

【 묻는법 】

○○가 지난 1년간 종사 이외의 일종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 작성요령 】

- 앞⑩란에서 주종사분야가 농사이외일(2)에 “○”표가 있는 경우에만 농사 이외의 일종 주로 종사한 분야를 물어 해당번호 하나에 “○”표 한다.
- 농사이외 주종사 분야별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농사 이외 종사분야에 대한 설명은 앞⑨란에 되어 있으므로 참고한다.
 - 사무직 : 기업체 및 국가기관에서 행정업무(주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 생산직 : 공장 등에서 직접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기계, 용접, 기타 수리등)
 - 상 업 : 가족단위로 경영하는 소규모의 장사를 말하며 다른 집에 고용된 판매원도 포함한다.(구멍가게, 시장의 각종장사등)
 - 어 업 : 해면어업(고기잡이 양식) 및 내수면어업을 포함한다.(고용원 포함)
 - 기 타 : 리튬반장, 수위, 운수업, 주유업, 도정업, 소개업, 건설업(건축공사장인 부)등과 농산가공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겸업조사

⑨란 1,2,3중에
○표 있으면

농업수입이 많다 1
농외수입이 많다 2

【 묻는법 】

댁의 가구원 전체가 얻은 농업수입과 농외수입 중 어느 쪽 수입이 더 많습니까?

【 작성요령 】

- ⑨란의 1~3중에 “○”표가 있는(가구원중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농가에 한하며 조사하며, 농업수입이 많은지, 농외수입이 많은지를 물어 해당 번호에 “○”표 한다.
- 농업수입이 많다면 1번에 “○”표 하고, 농외수입 이 많다면 2번에 “○”한다.
- 「농외수입이 많다」는 뜻은 해당가구의 수입중 농업수입보다 농사이외의 수입이 많을 때를 말한다.(조수입)
- 농업수입과 농외수입이 비슷할 때는 노력을 많이 경주한 쪽이 해당된다.
- ⑨란의 1, 2, 3에 “○”표가 하나도 없는 가구에 겸업사항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 농가에서 하숙으로 얻은 수입은 농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Ⅱ	농 경 지
---	-------

- 농경지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수목 등을 재배하는 토지로 논, 밭(수원지 포함)으로 구분된다.
- 10월 1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사하며 자기 소유나 남의 소유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 남의 개인 땅이나 국공유지를 빌린 경우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올해에 농사를 짓고 나서 내년에도 계속 빌리게 될지 미정인 경우는 금년에 농사를 지은 가구에서 조사한다.
 - 올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나 내년농사를 위하여 10월1일 이전에 남의 땅을 빌린 경우에는 빌린 가구에서 조사한다.
 - 간척지, 하천부지, 철도 연변, 황무지 및 개간지 등을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올해 농사는 짓지 않았으나 내년농사를 위하여 10월1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도 조사에 포함한다.
- 새로 개간, 간척 또는 매립한 경지로서 금년에는 작물을 전혀 심지 않았으나 내년에 심을 예정인 농지는 조사에 포함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지는 경작자 별로 나누어 조사한다.
- 10월 1일 이후에 매입하였거나 빌린 경지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① 논이 있습니까?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논 면적(102 + 103)			101						
소유관계	자 기 논		102						
	남의논(국공유지 포함)		103						

【 묻는법 】

10월 1일 현재 논은 얼마나 경작하고 계십니까? 낡은 논을 밭벼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작성요령 】

○ 논의 총면적을 101에 기입하고 그 면적을 다시 자기소유논 102과 남의 논 103으로 구분하여 조사 기입한다.

○ 논 면적 101

- 논이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관개배수시설을 갖추고 물을 대어 논벼, 미나리, 연뿌리 등을 주로 재배하는 경지를 말한다.

※ 호수 등에 심겨진 연뿌리 등은 제외.

- 과거는 밭이었으나 금년부터 논으로 바꾸어서 「논벼」를 심었다면 논으로 조사하고, 밭에서는 제외한다.

- 벼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내년에 다시 벼를 재배할 계획인 경우는 논으로 조사한다.

- 관개배수시설이 있는 경지라도 관행적으로 과수, 채소 등을 심어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밭으로 조사한다.

○ 자기 논 102

- 소유권이 경영주 또는 가구원 중에 있는 논으로 조사일 현재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경지(남에게 대부한 경지는 조사에서 제외한다.)를 말하며 등기가 되지 않은 경지도 자기 땅이면 포함한다.
- 2인 이상의 공유지는 조사 시점 현재 경작하는 사람 앞으로 조사한다.

○ 남의 논 103

- 타인소유지를 빌려 경작한 것으로서 이에 임차계약의 체결이나 임차료 지불 조건 등과는 관계없이 남의 개인소유 및 국공유지이면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
- 국공유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농축수협등)의 소유지를 말한다. 예를들면, 하천부지, 철도연변 등이 이에 속한다.

○ 101 = 102 + 103

● 남의 논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남의논 중	농가로부터 빌린논		104						
	비농가로부터 빌린논		105						
	기타 빌린논(국공유지등)		106						

【 묻는법 】

빌린 논이 ○ ○ ○ 평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농가입니까? 비농가입니까?

【 작성요령 】

- 논임대인이 농가인 경우는 빌린 면적을 104 에 기입하고 비농가인 경우에는 105 에 기입한다.

○ 기타 빌린논(국공유지 등) 106 은 다음과 같다.

- 소유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수협 등 공공기관인 경우
- 소유주가 종교단체, 기업체(법인), 사립학교 등인 경우
- 소유주가 종중, 묘사당, 친목계답 등

○ 103 = 104 + 105 + 106

● 이모작 논

	없다 √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이모작 논		107						

【 묻는법 】

논 ○ ○평 중 이모작 논은 몇 평입니까?

【 작성요령 】

- 이모작 논이란 일년에 두 번 이상 작물을 재배한 실적이 있는 논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벼 수확 후 보리재배, 시설채소재배, 사료작물(호밀 등) 등을 재배한 논을 말한다.

● 수리불안전답

	없다 √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수리불안전답(물사정이 나쁜 논)		108						

【 묻는법 】

댁의 논 중 물 사정이 나쁜 논이 있습니까?

【 작성요령 】

- 물사정이 나쁜 논이란 관정, 양수장, 보,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을 이용하여도 물이 부족하여 모내기등 벼농사에 지장을 받는 논을 말한다.
- 올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의 물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과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		109						

【 묻는법 】

댁의 논 중에서 경지정리된 논이 있습니까?

【 작성요령 】

- 경지정리된 논이 있으면 그 면적을 해당란에 기입한다.
-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이란 관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논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바둑판모양)정리된 경지를 말한다.

※ 이모작논, 수리불안전답, 경지정리된 논면적이 총 논면적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한다.

$$\boxed{101} \geq \boxed{107}, \quad \boxed{101} \geq \boxed{108}, \quad \boxed{101} \geq \boxed{109}$$

② 금년 논농사는 직접 지었습니까? 남에게 맡겨서 지었습니까?

작업별		내가 직접 지었다	남에게 맡겨서 지었다		
			전부	50% 이상	50% 미만
논갈이(경운)	111	1	2	3	4
모내기(이앙)	112	1	2	3	4
농약살포(방제)	113	1	2	3	4
벼베기	114	1	2	3	4
탈곡	115	1	2	3	4

【 묻는법 】

올해 논농사는 직접 지었습니까? 남에게 맡겨서 지었습니까

【 작성요령 】

- 벼농사 작업과정별로 질문을 하여 직접 지었으면 1번에, 남에게 맡겨서 지었으면 2, 3, 4중 해당되는 항 하나에 “○” 표 한다.
- 조사일 현재 벼베기 및 탈곡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향후 계획을 물어 기입한다.
- 콤바인으로 벼베기와 탈곡작업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벼베기와 탈곡작업에 모두 “○”표 한다.
- 내가 직접 지었다는 것은(작업과정별로 조사)
 - 벼농사의 /과정별 작업을 가구원이 직접 참여하여 지은 경우로 품앗이를 하였거나, 일꾼을 직접 고용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
 - 다른 집에서 빌린 농기계를 가지고 가구원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내가 직접 지은 것으로 조사한다.

○ 남에게 맡겨서 지었다는 것은(작업과정별로 조사)

- 해당 작업에 가구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여 지은 경우를 말한다.
- 벼농사 면적의 전부를 도급 또는 위탁하여 지은 경우에는 전부 (2)란에 “○”표 한다.
- 벼농사 면적중 일부분이라도 남에게 도급을 주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절반이상 남에게 주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해당란에 “○” 한다.
- 남에게 맡긴 비율 산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농약살포(방제) 작업은 여러 번 실시하게 되므로 전부 또는 부분 도급 및 위탁의 비율은 면적과 방제횟수를 참고하여 구분한다.

③ 밭이 있습니까?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밭면적(122+123)			121						
소유 관계	자기밭		122						
	남의밭(국공유지포함)		123						

【 묻는 법 】

10월 1일 현재 밭은 얼마나 경작하고 계십니까?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밭이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관개배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지로 논 이외의 경지를 말하며, 수원지를 포함한다.

※ 앞 논면적 (101 ~ 106)에 준하여 조사 기입한다.

$$\boxed{121} = \boxed{122} + \boxed{123}$$

● 남의 밭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남의 밭중	농가로부터 빌린밭		124						
	비농가로부터 빌린밭		125						
	기타 빌린밭(국공유지)		126						

【 묻는 법 】

빌린 밭이 ○ ○ ○평이 있는데 빌려준 사값이 농가입니까? 비농가입니까

※ 앞 남의 논 면적(110 ~ 106)에 준하여 조사 기입한다.

$$\boxed{123} = \boxed{124} + \boxed{125} + \boxed{126}$$

- 밭 면적 중 과수원, 뽕밭, 묘포, 기타 나무 심은 밭(수원지)이 있습니까?
(30평 이상 집단재배 한 것만 조사)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수원지면적(132 + ... + 136)			131						
그 중	과 수 원		132						
	뽕 밭		133						
	관 상 수		134						
	묘 포		135						
	기 타 나 무 심 은 밭		136						

【 묻는법 】

나무 심은 밭 중 과수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 작성요령 】

- 수원지란 과수원, 묘포 및 기타나무 심은 밭으로 반드시 각각 30평 이상 집단재배 한 것만 조사대상이 되며 산재된 것은 제외한다.
- 기타 나무 심은 밭은 차 생산을 위한 밭, 닥나무, 고리버들, 죽순을 따기 위한 대나무밭 등을 말한다.
- 유목을 새로 심은 수원지는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하기 쉬우므로 특히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밤나무를 심었거나 산에 집단적으로 뽕나무를 심은 경우는 경지 이외에 재배되었으므로 조사에서 제외한다.
- 포플라, 오동나무등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은 밭은 지목이 밭이라도 조사에서 제외한다.
- $\boxed{131} = \boxed{132} + \boxed{133} + \boxed{134} + \boxed{135} + \boxed{136}$

● 과수원 면적(=132)중 과종별 면적은 몇 평입니까?

	부호	십만	만	천	백	십	평
과수원면적합계(=132)	137						

【 묻는법 】

앞에서 과수원이 ○ ○ 평 있다고 하셨는데 과종별로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작성요령 】

○ 과종별 부호를 참고하여 과종명, 부호, 면적을 기입한다.

< 과종별 부호 >

사과 138, 배 139, 복숭아 140, 포도 141, 단감 142, 뽕은감 143, 감귤 144,
자두 145, 참다래 146, 대추 147, 매실 148, 기타 149

○ 기타(149)에는 앵두, 살구, 호두, 무화과, 유자, 모과, 석류, 비파 등이 해당
되며 2개 이상 과종이면 합하여 기입하고 조사란 오른쪽 여백에 각각의
과종별 면적을 기입한다.

○ $\boxed{137} = \boxed{138} + \boxed{139} \cdot \cdot \cdot \boxed{148} + \boxed{149}$

○ 목초지가 있습니까?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합계(152+153)		151						
초 지 면 적		152						
부대시설면적		153						

【 묻는법 】

댁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까?

【 작성요령 】

- 목초지란 가축의 사료를 장만하거나 놓아먹이기 위하여 풀 씨를 뿌려 재배 또는 기존 목초를 보호 관리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경지는 아님.
-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한 순 초지면적은 152에 기입하고 초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축사(가축 운동장 포함), 사료창고, 싸이로 주거시설 등이 차지한 부대시설 면적은 153에 기입한다. 여기에서 초지와 떨어져 있는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 대개 울타리를 설치하여 목초의 보호 및 방목한 가축의 외부출입을 막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목초지는 울타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 산이나 들의 자연생 목초를 하등의 보호관리 없이 그대로 베어다 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축이 없는데 목초지가 있거나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하는데 목초지가 없으면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여 누락 답변여부를 확인한다.
- 사료작물을 심은 경지는 목초지가 아님에 유의한다.
- 151 = 152 + 153

Ⅲ	작 물
---	-----

① 올 해 노지에서 수확하였거나 재배중인 작물의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작물 제외)

	없다 √표		수확 / 재배면적					
			십만	만	천	백	십	평
논 벼		201						
보 리		202						
맥 주 보 리		203						
옥 수 수(식용)		204						
콩		205						
팥		206						
감 자		207						
고 구 마		208						
소 계		209						
김 장 무		210						
김 장 배 추		211						
고 추		212						
양 파		213						
대 파		214						
마 늘		215						
수 박		216						
참 외		217						
소 계		218						
참 깨		219						
땅 콩		220						
인 삼		221						
담 배		222						
약 용		223						
소 계		224						

【 작성요령 】

○ 수확하였거나 재배 중인 면적이라 함은?

- 올해 이미 수확한 작물(보리, 마늘, 양파 등)면적이나 조사일 현재 재배 중인 작물(김장무·배추등) 면적을 말한다.
- 기상재해(한해, 수해)나 병충해로 인하여 전혀 수확을 못한 것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수확한 것은 모두 포함한다.
- 수확(재배)면적에는 두렁면적을 포함시킨다
- 과수원, 뽕밭등 수원지에 간작으로 재배한 작물도 포함한다.
- 옥수수나 보리를 식용이 아닌 사료나 녹비용으로 재배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 논벼 201부터 약용 223까지 차례차례로 물어 심지 않는 작물에 √표시를 한다.

○ 재배한 작물에 대하여 다시 물어서 논벼부터 √표시가 없는 작물만 차례로 그 면적을 해당 작물 란에 조사 기입한다.

○ 같은 작물을 1년에 2회 이상 재배하여 수확한 경우는 회수별 수확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기입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작물이 이랑을 달리하여 재배하였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미리 이랑을 넓혀 재배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작물 면적의 점유비율에 의하여 작물별 수확면적을 추정한다

(보 기) 면적이 1000평인 밭에 콩을 40이랑, 옥수수 160이랑씩 재배한 경우

☞ 콩 면적 = $1,000\text{평} \times \frac{40}{200} = 200\text{평}$, 옥수수면적 = $1,000\text{평} \times \frac{160}{200} = 800\text{평}$

※ 콩과 옥수수면적의 합계는 밭의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과수원이나 뽕밭에 간작으로 작물을 재배하였을 때에는 그 밭의 총면적을 과수나 뽕나무의 면적으로 일단 조사하고 간작한 작물은 실재 수확(재배)한 면적을 조사 기입한다.

(보 기) 1,000평의 복숭아 과수원에 고구마를 300평 간작으로 재배한 경우
 ☞ 복숭아 1,000평, 고구마 300평으로 조사한다.

- 한 포장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혼작하였을 때에는 파종량, 작물의 점유 면적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작물별 면적을 조사한다. 이때 작물의 면적 합계는 그 포장의 총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 시설작물의 수확면적은 다음 항(③ 시설작물)에서 조사되므로 본란에서는 제외한다.

② 올 해 수확하였거나 재배 중인 작물을 말씀해 주십시오(시설작물 제외)
 (수확하였거나 재배중인 작물이 있으면 1에 ○표)

	없다 √표		수확/재배 여부
들 깨		232	1
밀		233	1
조		234	1
수 수		235	1
메 밀		236	1
녹 두		237	1
상 추		238	1
쑥 갯		239	1
시 금 치		240	1
당 근		241	1
토 마 토		242	1
오 이		243	1
메 론		244	1
딸 기		245	1
양 채 류		246	1

【 작성요령 】

- “수확하였거나 재배중인 면적”의 개념은 앞 사항(① 올해 노지에서 수확하였거나 ……)에 따르고, 올해 수확하였거나 조사일 현재 재배중인 작물이 있으면 해당 작물의 “1”에 “○”표한다.
- 양채류는 양상추, 샐러리, 피망,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임
- 상추, 쪽갯등 자가소비용으로 소량씩 심는 작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 항목을 물어 조사한다.
- 시설작물의 수확여부는 다음 항(③ 시설작물)에서 조사되므로 본란에서는 제외한다.

③ 시설작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같은 시설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조장, 묘상전용 시설 제외)

		없다 √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시설면적(252+…+255)			251						
비 닐 하 우 스	일시적 시설		252						
	영구적 시설		253						
유 리 온 실			254						
기 타 시 설			255						

【 작성요령 】

- 시설면적은 지난 1년간('98. 10~'99. 9)설치되었던 면적을 말한다.
- 시설이란 사람이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을 말하며 비닐피복(멀칭)이나 터널재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시설내부에 난로, 전열기 등 보온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장치가 없어도 작물재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설자체가 보온할 수 있으면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 총 시설 면적을 251 에 기입하고,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그리고 기타 시설로 구분하며, 비닐하우스에서 다시 일시적 시설면적을 252 에 영구적 시설 면적을 253 에 구분하여 기입한다.
- 일시적 시설이란 연중 노지 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지에서 일시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작물을 재배하고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나 시설을 설치하여 작물을 수확 한 후 비닐피복을 일시적으로 제거한 경우가 해당된다.
- 영구적 시설이란 시설 설치를 고정시켜 놓고 연중 계속해서 시설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난 1년간 작물을 재배한 실적이 없는 시설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시설면적이 조사되면 다음란의 시설내 재배면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담배 건조장, 작업장, 묘상전용 시설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기타시설이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이외의 버섯재배사 등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 논에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벼를 수확한 후 시설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조사에 포함한다.
- 251 = 252 + 253 + 254 + 255

㉡ 위 시설내에서 올해 재배한 작물별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작물을 년중 2회 이상 재배시 연면적 기입)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시 설 재 배 작 물	토	마	토		261					
	오		이		262					
	딸		기		263					
	수		박		264					
	참		외		265					
	메		론		266					
	포		도		267					
	감		굴		268					
	소		계		269					
	시	금	치		270					
		무			271					
	배		추		272					
	상		추		273					
	꽃	고	추		274					
	양	채	류		275					
	기	타	채	소	276					
	소		계		277					
	화		훼		278					
	버		섯		279					
	기		타		280					
	소		계		281					

【 작성요령 】

- 재배면적을 기입하기 전에 각 작물의 재배여부를 확인하고 재배를 하지 않았다면 「없다」란에 √표를 하고, √표 없는 시설작물만 재배면적을 조사한다.
- 재배면적은 지난 1년간('98. 10~'99. 9) 시설 내에 작물재배면적으로 한 작물을 수확 후 다시 재배 수확하였을 경우 합산(연면적)한 면적을 기입한다.
- 양채류는 양상추, 샐러리, 피망, 양배추, 아스파라가스 등임.

IV	가축, 가금
----	--------

① 주요가축 마리수를 암수컷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마리
한·육우	총마리수(302+303)		301						
	암 컷		302						
	수 컷		303						
젖 소(수컷은 한·육우)			304						
돼 지(총 마리수)			305						
닭	총마리수(309+310)		308						
	산 란 용		309						
	육 계 용		310						

【 작성요령 】

- 우선 사육여부를 물은 다음 없다면 「없다」란에 √표 하고, √표 없는 가축만 10. 1일 현재 마리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성별 구분의 합계는 총 마리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젖소 수컷은 한·육우 수컷에 포함하여 조사 기입한다.
- 젖소는 암컷만을 말하며 젖을 얻기 위하여 기르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품종을 말한다.
- 돼지는 총 마리수만 조사하되, 멧돼지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닭은 산란용과 육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데 그 구분은 품종에 의하지 않고 사육목적에 의하여 구분한다.
- 산란용 품종인 백색 레그혼이라도 사육목적이 육계용이면 육계용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육용종이라도 계란을 내기 위하여 기르는 경우에는 산란용에 포함시킨다.

② 기타가축의 사육마리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 √표		십만	만	천	백	십	마리
기 타 가 축	젖	산 양		311						
	면	양		312						
	염	소		313						
	사	슴		314						
	여	우		315						
	밍	크		316						
	토	끼		317						
	오	리		318						
	칠	면 조		319						
	메	추 리		320						
	꿀	벌		321						
		평		322						
	기	타		323						
		계		324						

【 작성요령 】

- 우선 사육여부를 물은 다음 없다면 「없다」란에 √표하고, √표시 없는 가축만 10. 1일 현재 마리수(꿀벌은 통수)를 조사한다.
- 젖산양은 자넌, 알파민, 뉴비안등 하얀산양으로서 수컷도 여기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 염소는 검은 염소를 말하며 비록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암컷이라도 사육목적은 유용이 아니고 육용이므로 여기에 포함한다.
- 양봉에 있어서 벌통수는 벌이 있는 것만 조사하며 이동사육인 경우 월동을 위해서 일시 남의 집에 보관시키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 포함 조사한다.
- 기타에 해당되는 가축으로는 말, 치라, 노새, 당나귀, 겨위 등이 해당된다.

○

 =

 +

 + ... +

 +

※ 주의 : 가축을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다.

V	농 기 계
---	-------

○ 동력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 √ 표		십	대
경운기		401		
트랙터		402		
SS분무기		403		
정미기		404		
콤바인		405		
바인더		406		
사료(절단, 예취, 분쇄)기		407		
관리기		408		
건조기		409		
양수기		410		
이앙기		411		
운반용트럭		412		
계		413		

【 작성요령 】

- 10월 1일 현재 농기계 소유여부를 물은 다음 있다면 해당 기종란에 대수를 기입하고, 없으면 「없다」란에 √표 한다.
- 남에게 빌려주었거나 일시 남에게 보관시켜 10월1일 현재 자기집에 없어도 자기소유 대수에 포함 조사한다.
- 공동소유인 경우 10월1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조사한다.
 - ※ 공동소유라 함은 개인끼리(2~3인) 돈을 내어 구입한 농기계를 말하며 마을 공동용은 제외한다.
- 일부고장이 난 기계는 수리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은 조사에 포함시키고 수리할 계획이 없거나 수리하여도 못 쓸 것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VI

문화용품 및 시설

○ 택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및 시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없다 √ 표		있으면 ○표
텔 레 비 전		501	1
컴 퓨 터		502	1
비 디 오		503	1
승 용 차		504	1
입 식 부 역		505	1
수 세 식 화 장 실		506	1

【 묻는법 】

택에는 텔레비전/컴퓨터/비디오/승용차가 있습니까?
부역은 입식입니까?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 작성요령 】

- 각 문화용품 및 시설별로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있다면 1에 “○”표하고, 없다면 “√”표 한다.
- 문화용품의 경우 한 기종이 두 가지 기종의 기능을 하는 경우 기능별로 각각 조사한다.
 - 비디오비전은 텔레비전과 비디오에 각각 “○”표하고 컴퓨터를 텔레비전 및 비디오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컴퓨터, 텔레비전 및 비디오로 각각 “○”표 한다.

VII

영농형태별

○ 맥의 농업수입 중 가장 많은 수입이 되는 농사는 어느 것입니까?(조수입)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전작	축산	양잠	기타
601	1	2	3	4	5	6	7	8	9
602									

↓

사	과	1
배		2
포	도	3
복	송	4
감	아	5
기타	과수	6

↓

일반채소	1
시설채소	2

↓

한우	1
젖소	2
돼지	3
닭	4
기타가축	5

【작성요령】

○ 조수입이 가장 많은 농사가 어느 것인지 물어 하나에 “○”표 한다. 601란의 과수, 채소, 축산에 “○”표 있을 때 602란에는 각기 아래 보기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의 숫자를 기입한다.

○ 수입이 비슷할 때에는 종사한 기간과 노력을 더 많이 한 형태에 “○”표 한다.

- 논벼 : 농업수입중 논벼농사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 과수 : 농업수입중 과수농사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 채소 : 농업수입중 채소농사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 특용작물 : 농업수입중 특용작물(유지작물, 약용작물, 담배, 버섯등)의 농사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 화훼 : 농업수입중 화훼(꽃, 분재, 관상수등) 농사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 전작 : 농업수입중 전작(밭벼,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등)농사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 기타 :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 농업 서비스업(양수, 탈곡)과 양모, 전지, 병아리 감별 등을 통한 수입이 많은 농가.

VIII	농·축산물 판매
-------------	-----------------

① 귀택에서 농·축산물을 수확하거나 사육하여 판매한 총 금액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40만원 미만	40 } 100만원	100 } 500	500 } 1,000	1,000 } 2,000	2,000 } 3,000	3,000 } 4,000	4,000 } 5,000	5,000 } 1억	1억 } 2억	2억원 이상
701	1	2	3	4	5	6	7	8	9	10	11

【 작성요령 】

- 지난 1년간('98. 10~'99. 9) 농·축산물을 수확하거나 사육하여 판매한 총 금액을 물어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 한다.
-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40만원 미만(1)”에 “○”표 한다.
- 농축산물이란
 - 농산물 : 일반작물(벼, 보리, 감자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과수, 뽕나무, 관상수, 묘목, 기타(화훼, 버섯재배 등)를 총칭한다.
 - 축산물 : 가축, 가금 및 그 생산물을 말한다.
 - 가축·가금 : 소, 말, 양, 돼지, 노새, 당나귀, 토끼, 친치라, 멧크, 사슴, 여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등
 - 가축, 가금의 생산물 :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꿀, 원피, 원모 등을 말한다.

② 귀택에서 농·축산물 중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는 어느 것 입니까?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양잠	기타	없음
702	1	2	3	4	5	6	7	8	9	0

【 작성요령 】

○ 농사종류는 앞의 “Ⅶ.영농형태별” 개념에 따른다.

○ 판매금액이 비슷할 때에는 종사한 기간과 노력을 더 많이 한 형태에 “○”표 한다.

③ 위 ②항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축산물은 어떻게(어디/누구)판매 하였습니까?

	도매시장		공판장	계통출하	수매	수집상	자가매장	재래시장	기타	판매없음
	공영	기타								
703	1	2	3	4	5	6	7	8	9	0

【 작성요령 】

○ 동일작물에 대해 판매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금액이 많았던 쪽을 우선 선정한다.

- 도매시장 : 생산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도매시장(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통해 판매한 경우
- 공 판 장 : 농축산물을 공판장을 통해 판매한 경우
- 계통출하 : 농·축협 등의 판매조합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수 매 : 정부수매, 농협수매, 회사 등과 계약재배에 의한 수매등
- 수 집 상 : 생산지에서 산지수집상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자가매장 : 생산자가 직영하는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재래시장 : 생산지 인근의 재래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5일, 10일시장, 기타 일반시장)
- 기 타 : 1~8의 판매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IX	향후 영농계획
----	---------

① 앞으로 경영주로서 농사일을 얼마나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801	1	2	3	4	5

【 작성요령 】

○ 해당구간의 번호에 “○” 표 한다.

○ 경영주로서의 농사일이란 모든 농사일(작목선택, 재배방법 결정, 처분시기 및 방법결정 등)을 자신이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향후 5년 이내 경지규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2	1	현재규모유지	2	확대	3	축소	4	모르겠다
-----	---	--------	---	----	---	----	---	------

【 작성요령 】

○ 해당구간의 번호에 “○” 표 한다.

○ 경지규모는 논·밭의 규모를 말한다.

③ 향후 5년 이내에 영농형태를 전환하신다면 어떤 농사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전작	축산	양잠	기타	계획없음
803	1	2	3	4	5	6	7	8	9	0

【 작성요령 】

○ 농사종류는 앞의 “Ⅶ.영농형태별” 개념에 따른다.

VII.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Ⅶ. 조사표류 검토, 보완 및 제출

1. 조사표의 검토 및 보완

가. 검토시기

- 조사표의 검토는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현지검토와 개개 농가의 조사가 끝난 다음 검토하는 사후검토가 있으나 가급적 현지검토를 함으로써 조사표의 정리, 기타 사후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 일단 응답자와 면접조사가 끝나면 몇 가지 기본사항에 유의하여 조사원 자신이 검토하고 현지에서 수정한다.
 - 수정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줄을 옆으로 긋고 분명히 기입한다.
 - 어떤사정으로 현지검토가 불가능하였을 때는 자택에 돌아와서 그날 그날의 조사표를 검토하고 재방문이 필요할 때는 표시를 해 놓았다가 다음날 조사 시에 이를 먼저 재조사한다.

나. 검토요령

○ 기입의 누락여부

- 첫째, “○”표할 곳에 표시가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보기) 조사대상 구분, 성별, 영농후계자, 학력 등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활동사항

- 둘째, 「√표」의 누락여부

영농인구의 일부란과 영농형태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마다 「없다」란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조사항목이 해당 안될 때에 √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표가 없는데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조사가 누락된 것이며 √표가 있는데도 내용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표가 잘못되었거나 숫자기입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 합계와 내용 숫자의 일치 여부

다음표를 참조하여 합계숫자와 내용숫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 사 항 목	내 용	코 드 번 호
농가인구		
○ 가구원수	○ 합계 = 남자 + 여자 - 가정부, 고용인도 포함 - 객지에 나가 있는 승계자 제외	
농 경 지		
○ 논		
- 논 소유관계	○ 논 면적 = 자기 논+남의 논	101=102+103
- 논 임차	○ 빌린 논면적 합계 = 남의 논	104+105+106=103
- 논 이용, 관계	○ 이모작 면적, 수리불안전답의 면적,	107≤101, 108≤101,
- 시설, 경지정리	○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 면적이 논 총 면적보다 많으면 안 된다.	109≤101
○ 밭		
- 밭 소유관계	○ 밭면적=자기 밭+남의 밭	121=122+123
- 밭 임차	○ 빌린 밭면적 합계=남의 밭	124+125+126=123
- 수원지면적	○ 수원지면적은 밭면적 보다 크면 안된다 - 과수원, 뽕밭, 관상수, 묘포, 기타나무 심은 밭의 합계	121≥131 131=132+...+136
- 과수원의 면적	○ 과수원=과수원 면적 합계	137=138+...+149=132
작 물		
○ 작물수확면적	○ 입력오류 방지용 소계란의 기입	202+...+208=209
○ 시설면적	○ 시설면적 = 일시적시설+영구적시설 +유리온실+기타시설	251=252+...+255
○ 시설재배면적	○ 입력오류 방지용 소계란의 기입	261+...+268=269
가축·가금		
○ 한·육우	○ 총마리수=암컷+수컷	301=302+303
○ 닭	○ 총마리수=산란용+육용	308=309+310
농 기 계	○ 입력오류방지용 소계란의 기입	401+...+412=413

(3) 조사항목 상호간의 연관성과 합리성

조사항목 중에는 전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다. 이들 연관성 있는 조사 항목의 조사내용은 서로 합리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모순이 없는가 유의하여야 한다

- 대농에 속하는 농가가 「농가인구」에서 고용인이 없는데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노약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이 때 고용인 누락 또는 만 15세 이상 식구의 누락여부를 확인할 것

- 만 15세 이상 식구의 취업사항에서 농사에 종사한 기간이 ⑧란의 3, 4번에 “○”표 있는 것은 대개 ⑩란 1번에 “○”표가 있어야 하며, ⑨란의 2, 3번에 “○”표 있는 것은 ⑩란 2에 해당될 것임

- 「농경지」의 ③목초지에 면적이 조사되었으나 「가축·가금」에서 가축 사육 마리수가 없는 경우

- 경지면적에 비하여 작물수확(재배)면적이 특별한 사유없이 크게 차이나거나 가축·가금의 사육마리수는 많은데 판매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 판매금액을 재조사함은 물론, 작물 및 가축·가금 현황에 대하여도 재검토 해야 함

- 농기계가 많은데 수확한 농작물이 과소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 「Ⅷ. 농축산물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작물과 「Ⅶ. 영농형태별」 구분이 서로 다른 경우

→ 다를 수도 있으나 검토·확인해 볼 필요 있음

- 「Ⅸ. 향후영농계획」 조사시 경영주 연령과 답변내용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2. 조사표류 제출

- 조사표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관할 통계사무소 및 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조사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관련서류>

- ①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② 조사표 ③조사원증 ④ 조사원 업무일지
⑤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⑥ 조사지침서 ⑦ 기타 관련서류 일체
- 조사표는 조사구별, 조사표 크기별(A4, A3)로 묶어 제출한다.
- 농업조사구는 조사표 2종(A4, A3)이 사용되었으므로 각각 묶는다.
 - 어촌지역의 어업조사구에서 어가 및 농가 조사표가 모두 있을 경우 어가조사표를 앞에, 농업조사표를 그 뒤에 묶는다.

<조사표철 표지 작성 요령>

○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어업조사구 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해당 행정구역 이름 및 부호를 기입한다
- 해당 농·어업조사구의 번호를 기입한다.

○ 인구주택조사구별 농·어가수

인구주택조사구 번호	총 가구수	농·어가수(조사표 매수)		
		계(A+B)	농가수(A)	어가수(B)
합 계				

행정리 명	행정리 번호
행정리수	

- 해당농·어업조사구내에 농가 및 어가가 있는 인구주택조사구를 인구주택조사구 번호순으로 기입한다. 인구주택조사구가 많아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입, 부착한다.
- 총 가구수는 해당 인구주택조사구내의 전체 가구수를 기입한다.
- ※ 합계란의 총가구수는 '95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조사를 참고하고 해당 농·어업조사구내의 농·어가 없는 인구주택조사구의 가구수도 포함한다.
- 농·어가구수는 2000 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된 농·어가수를 기입한다.
- ※ 해당 인구주택 조사구내의 농·어가수를 기입하며, 총농·어가수는 조사표 매수와 일치해야 한다.
- 해당 행정리 명칭 및 번호를 기입한다.

부 록

② 올해 수확하였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을 말씀해 주십시오(시설 작물 제외)

IV 가축가금

(수확하였거나 재배중인 작물이 있으면 1에 0표)

없다 V표	수확/재배여부
들깨	232 1
밀	233 1
조	234 1
수수	235 1
메밀	236 1
녹두	237 1
상추	238 1
쑥갓	239 1
시금치	240 1
당근	241 1
마토	242 1
오이	243 1
메론	244 1
딸기	245 1
양채류	246 1

* 양채류 : 양상추, 셀러리, 피망 등

③ 시설작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④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같은 시설면적은 얼마나 됩니까?(건조장, 묘상전용 시설제외)

* 올해 재배시설이 없는 시설은 제외

없다 V표	심만	천	백	십	평
시설면적(252+...+255)	251				
비닐하우스 일시적시설	252				
비닐하우스 영구적시설	253				
유리온실	254				
기타시설	255				

* 시설 규모는 사람이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

* 시설내부에 보온장치(난로, 전열기 등)가 없어도 작물재배에 지장이 없으면 모두 포함한다.

⑤ 위 시설내에서 올해 재배한 작물별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작물을 년중 2회이상 재배시 면적 기입)

없다 V표	심만	천	백	십	평
토마토	261				
오이	262				
딸기	263				
수박	264				
참외	265				
메론	266				
포도	267				
감	268				
소고기	269				
시금치	270				
무	271				
배추	272				
상추	273				
꽃고추	274				
양채류	275				
기타채소	276				
소고기	277				
화훼	278				
버섯	279				
기타	280				
소고기	281				

① 주요가축의 마리수를 암수컷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 V표	심만	천	백	십	평
한우 총마리수(302+303)	301				
우암	302				
우수	303				
젖소(수컷은 한우우)	304				
돼지(총마리수)	305				
닭 총마리수(309+310)	308				
산란용	309				
육계용	310				

② 기타가축의 사육마리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가축	311				
면양	312				
염소	313				
사슴	314				
여우	315				
밍크	316				
토끼	317				
오리	318				
칠면조	319				
물추리	320				
꿀벌(통)	321				
평	322				
기타	323				
계	324				

* 기타에 속하는 가축으로 말, 노새, 당나귀, 친치라, 거위 등

V 농기계

(공동소유인 경우 10. 1일 현재 보관자 앞으로 조사한다.)

○ 동력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 V표	심	대
경운기	401	
트랙터	402	
SS분무기	403	
정미기	404	
콤바인	405	
바인더	406	
사료(절단, 예취, 분쇄)기	407	
관리기	408	
건조기	409	
양수기	410	
이앙기	411	
윤반용트럭	412	
계	413	

VI 문화용품 및 시설

○ 데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및 시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없다 V표

있으면 0표	있으면 0표
텔레비전	501 1
컴퓨터	502 1
비디오	503 1
싱어	504 1
입식부엌	505 1
수세식화장실	506 1

VII 영농형태별

○ 데의 농업 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이 되는 농사는 어느 것입니까? (조수입) (하나만 0표)

* 전작 : 밭작물중 일반작물(밭벼,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화훼 : 꽃, 분재, 관상수 등

는	과	채	특용작물	화	전	축	양	기
벼	수	소	물	채	작	산	잠	타
601	1	2	3	4	5	6	7	8
602								

사배도	포복상도	감	기타과수	일반채소	시설채소	한우우	기타가축
1	2	3	4	5	6	1	2
1	2	3	4	5	6	1	2
2	3	4	5	6	7	3	4

* 601란 과수, 채소, 축산에 0표 있을 때 602란에는 각기 아래 보기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항목의 숫자를 기입한다.

VIII 농축산물판매

① 귀데에서 농·축산물을 수확하거나 사육하여 판매한 총 금액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40만 원 미만	40~100만 원	100~500만 원	500~1,000만 원	1,000~2,000만 원	2,000~3,000만 원	3,000~4,000만 원	4,000~5,000만 원	5,000~1억 원	1억~2억 원	2억 원 이상
701	1	2	3	4	5	6	7	8	9	10

② 귀데에서 판매한 농·축산물 중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는 어느것입니까?

* 전작 : 밭작물중 일반작물(밭벼,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화훼 : 꽃, 분재, 관상수 등

는	과	채	특용작물	화	전	축	양	기	판매없음
벼	수	소	물	채	작	산	잠	타	
702	1	2	3	4	5	6	7	8	9
									0

③ 위 ②항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축산물은 어떻게(어디/누구)판매하였습니까?

도매시장	공판장	계통물하매	수집상	자가매장	재래시장	기타	판매없음
703	1	2	3	4	5	6	7
							0

IX 향후 영농계획

① 앞으로 경영주로서 농사일을 얼마나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801	1	2	3	4
				5

② 향후 5년 이내 경지 규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2	1 현재규모유지	2 확대	3 축소	4 모르겠다
-----	----------	------	------	--------

③ 향후 5년 이내에 영농형태를 전환하신다면 어떤농사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는	과	채	특용작물	화	전	축	양	기	계획없음
벼	수	소	물	채	작	산	잠	타	
803	1	2	3	4	5	6	7	8	9
									0

조사자	읍·면·동 검토자	시·군·구 검토자	통계사무소검토자	응답자전화번호
성명 (서명)			직 성명	



지 정 통 계
제 10141 호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13조, 제14조)

2000 농업 총조사 시 험 조 사 표

(1999년 10월 1일 기준)

관 리 사 항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농 업 조 사 번 호	농 가 구 일 번 호	인 구 주 택 조 사 구 번 호

조사대상구분	
자 급	판 매
1	2

- 행정구역 부호는 '95.농어업총조사시의 분류부호를 기입
- 인구주택조사구 번호는 '95.인구주택총조사시의 번호를 기입
- 조사대상구분
 - 자급농가 : 자급을 주목적으로 농사를 지음
 - 판매농가 : 판매를 주목적으로 농사를 지음

조 사 일	1999년 10월 일		
응 답 자	☎ () -	성 명 :	(인)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검 토 자	직	성 명 :	(인)

통 계 청

I

농가인구

가 구 원 수	합 계			가 구 원 성 명 및 경 영 주 와 의 관 계 (경영주:1,부, 모, 처, 장남, 장녀등으로 기 입)	성 명 ① 관 계	(1)	(2)	(3)	(4)	(5)	(6)	(7)	
	만15세 이상	남											
		여											
	만15세 미만	남											
여													
			만나이(1999.10.1기준)	②									
성 별		남		③	1	1	1	1	1	1	1	1	
		여			2	2	2	2	2	2	2	2	
15	혼 인	기 혼		④	1	1	1	1	1	1	1	1	
		미 혼			2	2	2	2	2	2	2		
	영농 승계자			⑤	1	1	1	1	1	1	1		
	교 육 정 도	초 등 학 교		⑥	1	1	1	1	1	1	1	1	
		중 학 교			2	2	2	2	2	2	2	2	
		고 등 학 교			3	3	3	3	3	3	3	3	
		전 문 대 학			4	4	4	4	4	4	4	4	
		대 학 교			5	5	5	5	5	5	5	5	
		대 학 원			6	6	6	6	6	6	6	6	
		안 다 녀 었 음			7	7	7	7	7	7	7	7	
	세 이 년 상 만 조 사	지 난 1 년 간 (1 9 9 8 · 1 0 · 1 9 9 9 · 9 월)	가 구 원 별 로 농 사 일 을 한 말 씀 하 여 주 십 시 오	없 다 1개 월 미 만 1~3 개 월 3~6 개 월 6개 월 이 상	⑦	0	0	0	0	0	0	0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돈벌이를 위해 농사 이외 일을 한 기간은 얼 마나 됩니까		없 다[1개월미만포함] 1~3 개 월 3~6 개 월 6개 월 이 상	⑧	0	0	0	0	0	0	0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년 간 가 구 원 별 주 종 사 분 야 를 말 씀 하 여 주 십 시 오.		농 사	⑨	1	1	1	1	1	1	1			
	농 사 이 외 일	2		2	2	2	2	2	2				
	학 생	3		3	3	3	3	3	3				
	기타 (가사·환자) 무직자	4		4	4	4	4	4	4				
농사 이외의 일 중 주로 종사 한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사 무 직	⑩	1	1	1	1	1	1	1				
	생 산 직		2	2	2	2	2	2	2				
	상 업		3	3	3	3	3	3	3				
	어 업		4	4	4	4	4	4	4				
	기 타		5	5	5	5	5	5	5				
검 산 계		②~⑩란까지 합계	⑪										
⑧란 1,2,3에 ○표 있으면		농업수입이 많다1 농외수입이 많다2	⑫										

II 농경지

① 논이 있습니까?

없다
v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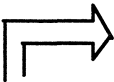
논면적(102+103)		101					
소유 관계	자 기 논	102					
	남의논(국공유지포함)	103					
남의 논중	농가로부터 빌린 논	104					
	비농가로부터 빌린 논	105					
	기타 빌린논(국공유지 등)	106					
이 모 작 논		107					
수리불안전답(물사정이나쁜논)		108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		109					

② 금년 논농사는 직접 지었습니까?

남에게 맡겨서 지었습니까?

작 업 별	내 가 직 접 지었다	남에게 맡겨서 지었다			
		전 부	50% 이상	50% 미만	
논 갈 이(경운)	111	1	2	3	4
모 내 기(이앙)	112	1	2	3	4
농약살포(방제)	113	1	2	3	4
벼 베 기	114	1	2	3	4
탈 곡	115	1	2	3	4

※ 콤바인으로 수확을 했을 경우 벼베기와 탈곡 모두 ◦표 한다



<과 중 별 부 호>

사과 138, 배 139, 복숭아 140, 포도 141, 단감 142, 딸은감 143, 감귤 144, 자두 145, 참다래 146, 대추 147, 매실 148, 기타 149

② 밭이 있습니까?

없다
v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밭면적(122+123)		121					
소유 관계	자 기 밭	122					
	남의밭(국공유지포함)	123					
남의 밭중	농가로부터 빌린 밭	124					
	비농가로부터 빌린 밭	125					
	기타 빌린밭(국공유지 등)	126					

○ 밭 면적중 과수원, 병발, 묘포, 기타나무
심은밭(수원지)이 있습니까?

(30평 이상 집단재배한 것만 조사)

	없다 v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수원지면적(132+...+136)	131					
그중	과 수 원	132				
	병 발	133				
	관 상 수	134				
	묘 포	135				
	기타 나무 심은밭	136				

○ 과수원 면적(=132)중 과중별면적은 몇평입니까?

	부 호	십만 만 천 백 십 평				
과수원면적합계(=132)	1 3 7					

○ 목초지가있습니까?

	없다 v표	십만 만 천 백 십 평				
합 계(152+153)	151					
초 지 면 적	152					
부 대 시 설 면 적	153					

Ⅲ 작 물

- ① 올해 수확하였거나 재배중인 작물의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시설 작물 제외)
- ② 올해 수확한 농작물을 말씀해 주십시오.(시설
작물 제외)
(수확한 작물이 있으면 1에 ○표)

			없다 V표	수확 / 재배 면적					
				십 만	만	천	백	십	평
논	벼		201						
보	리		202						
맥	주 보 리		203						
옥	수 수(식 용)		204						
	콩		205						
	팥		206						
감	자		207						
고	구 마		208						
소	계		209						
김	장 무		210						
김	장 배 추		211						
고	추		212						
양	파		213						
대	파		214						
마	늘		215						
수	박		216						
참	외		217						
소	계		218						
참	깨		219						
땅	콩		220						
인	삼		221						
담	배		222						
약	용		223						
소	계		224						

- ※ 초지면적 → 부대시설면적을 제외한 순초지 면적
- ※ 부대시설은 축사(가축운동장 포함), 사료창고, 싸이로, 주거시설,
등이 차지한 땅을 말하며, 초지와 떨어져 있는 부대시설은 제외
한다.

		없다 V표	수확면적 있으면 ○표
들	깨	232	1
	밀	233	1
	조	234	1
수	수	235	1
메	밀	236	1
녹	두	237	1
상	추	238	1
쑥	갓	239	1
시	금 치	240	1
당	근	241	1
토	마 토	242	1
오	이	243	1
메	밀	244	1
딸	기	245	1
양	채 류	246	1

- * 양채류 : 양상추, 셀러리, 피망 등
- ③ 시설작물면적(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 ㉗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같은 시설면적은
얼마나 됩니까?(건조장, 묘상전용 시설제외)
- ※ 올해 재배실적이 없는 시설은 제외

		없다 V표	십 만	만	천	백	십	평
시설면적(252+...+255)		251						
비	일 시 적 시설	252						
하	영 구 적 시설	253						
유	리 온 실	254						
기	타 시 설	255						

- ※ 시설규모는 사람이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
로 만든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
- ※ 시설내부에 보안장치(난로, 전열기 등)가 없어도 작물재배에
지장이 없으면 모두 포함한다.

㉔ 위 시설내에 올해 재배한 작물별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㉕ 기타가축의 사육마리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작물을 년중 2회 이상 재배시 연 면적 기입)			없다 V표	십 만	만	천	백	십	평
시 설 재 배 작 물	토	마	토	261					
	오		이	262					
	딸		기	263					
	수		박	264					
	참		외	265					
	메		론	266					
	포		도	267					
	감		굴	268					
	소		계	269					
	시	금	치	270					
		무		271					
	배		추	272					
	상		추	273					
	꽃	고	추	274					
	양	채	류	275					
	기	타	채	276					
	소		계	277					
	화		훼	278					
	버		섯	279					
	기		타	280					
	소		계	281					

기 타 가 축	젓	산	양	261					
	면		양	262					
	염		소	263					
	사		슴	264					
	여		우	265					
	밍		크	266					
	토		끼	267					
	오		리	268					
	칠	면	조	269					
	메	추	리	270					
	꿀		벌(통)	271					
		평		272					
	기		타	273					
		계		274					

※ 기타에 속하는 가축으로 말, 노새, 당나귀, 친치라,거위 등

V

농기계

(공동소유인 경우 12. 1일 현재 보관자 앞으로 조사한다)

○ 동력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 V표	십 만	만	천	백	십	대
경	운	기	401						
트	렉	타	402						
SS	분	무	403						
정	미	기	404						
콤	바	인	405						
바	인	다	406						
사료(절단,예취,분쇄)기			407						
관	리	기	408						
건	조	기	409						
양	수	기	410						
이	양	기	411						
운	반	용	트	412					
계			413						

IV

가축가금

① 주요가축의 마리수를 암수컷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 V표	십 만	만	천	백	십	마리
한 육 우	총마리수(302+303)		301						
	암	컷	302						
	수	컷	303						
젓소(수컷은 한육우)			304						
돼지(총마리수)			305						
닭	총마리수(309+310)		308						
	산	란	용	309					
	육	계	용	310					

VI 문화용품 및 시설

○ 맥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및 시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없다 V표		있으면 ○표	
텔	레	비	전		501	1	
컴	퓨	터			502	1	
비	디	오			503	1	
승	용	차			504	1	
입	식	부	엿		505	1	
수	세	식	화	장	실	506	1

VII 영농형태별

○ 맥의 농업 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조수입)이 되는 농사는 어느 것입니까?(하나만 ○표)

※ 전작 : 밭작물중 일반작물(밭배,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 화훼 : 꽃, 분재, 관상수 등

	논	과	채	특	화	전	축	양	기
	벼	수	소	용	채	작	산	잠	타
601	1	2	3	4	5	6	7	8	9
602									

사	과	1	↑	일반 채소	1	↑	한 육 우	1
배		2		시설 채소	2		첫 소 돼 지 닭 기타가축	2 3 4 5
포	도	3						
복	숭 아	4						
감	굴	5						
기타과수		6						

※ 601란 과수, 채소, 축산에 ○표 있을 때
602란에는 각기 아래 보기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항목의 숫자를 기입한다

VIII 농·축산물 판매

① 귀덕에서 농·축산물을 수확하거나 사육하여 판매한 총 금액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40 만 원 미 만	40 ~ 100 만 원	100 ~ 500 1,000	500 ~ 1,000 2,000	1,000 ~ 2,000 3,000	2,000 ~ 3,000 4,000	3,000 ~ 4,000 5,000	4,000 ~ 5,000 1억	5,000 ~ 1억 2억	1억 ~ 2억	2억 이 상
701	1	2	3	4	5	6	7	8	9	10	11

② 귀덕에서 판매한 농·축산물 중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는 어느것입니까?

	논	과	채	특	화	전	축	양	기	판매
	벼	수	소	용	채	작	산	잠	타	없음
702	1	2	3	4	5	6	7	8	9	0

③ 위 ②항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축산물은 어떻게(어디/누구) 판매 하였습니다습니까?

	도매시장		공 판 장	계 통 출 하	수 매	수 집 상	자 가 매 장	재 래 시 장	기 타	판 매 없 음
	공영	기타								
703	1	2	3	4	5	6	7	8	9	0

IX 향후영농계획

① 앞으로 경영주로서 농사일을 얼마나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801	1	2	3	4	5

② 향후 5년 이내 경지 규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현재규모유지	2	확대	3	축소	4	모르겠다
802								

③ 향후 5년 이내에 영농형태를 전환하신다면 어떤 농사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논	과	채	특	화	전	축	양	기	계획
	벼	수	소	용	채	작	산	잠	타	없음
803	1	2	3	4	5	6	7	8	9	0

승인번호
제10141호
제10146호

읍면동	시군구	시
동	구	도

농·어업조사구번호	가구수	농가수	어가수

지도원	인
조사원	인

[illegible]

[illegible]

VI 문화용품 및 시설

- 맥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및 시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없다 V표		있으면 ○ 표	
텔	레	비	전		501	1	
컴		퓨	터		502	1	
비		디	오		503	1	
승		용	차		504	1	
입	식		부	엿	505	1	
수	세	식	화	장	실	506	1

VII 영농형태별

- 맥의 농업 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조수입)이 되는 농사는 어느 것입니까?(하나만 ○표)

- ※ 전작 : 밭작물중 일반작물(밭벼,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 화훼 : 꽃, 분재, 관상수 등

	논	과	채	특	화	전	축	양	기
	벼	수	소	용	작	체	산	잠	타
601	1	2	3	4	5	6	7	8	9
602									

사	과	1	일반	채소	1	한	육	우	1
배	도	2	시설	채소	2	젖	소	2	
포	아	3				돼	지	3	
복	굴	4				닭		4	
감	수	5				기타가축		5	
기타과수		6							

- ※ 601란 과수, 채소, 축산에 ○표 있을 때
602란에는 각기 아래 보기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항목의 숫자를 기입한다

VIII 농·축산물판매

- ① 귀덕에서 농·축산물을 수확하거나 사육하여 판매한 총 금액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40 만 원 미 만	40 ~ 100 만 원	100 ~ 500 1,000	500 ~ 1,000 2,000	1,000 ~ 2,000 3,000	2,000 ~ 3,000 4,000	3,000 ~ 4,000 5,000	4,000 ~ 5,000 1억	5,000 ~ 1억 2억	1억 ~ 2억	2억 이 상
701	1	2	3	4	5	6	7	8	9	10	11

- ② 귀덕에서 판매한 농·축산물 중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는 어느것 입니까?

	논	과	채	특	화	전	축	양	기	판매
	벼	수	소	용	작	체	산	잠	타	없음
702	1	2	3	4	5	6	7	8	9	0

- ③ 위 ②항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축산물은 어떻게(어디/누구) 판매 하였습니다니까?

	도매시장		공 판 장	계 통 출 하	수 매	수 집 상	자 가 매 장	재 래 시 장	기 타	판 매 없 음
	공영	기타								
703	1	2	3	4	5	6	7	8	9	0

IX 향후영농계획

- ① 앞으로 경영주로서 농사일을 얼마나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801	1	2	3	4	5

- ② 향후 5년 이내 경지 규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2	1	현재규모유지	2	확대	3	축소	4	모르겠다
-----	---	--------	---	----	---	----	---	------

- ③ 향후 5년 이내에 영농형태를 전환하신다면 어떤 농사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논	과	채	특	화	전	축	양	기	계획
	벼	수	소	용	작	체	산	잠	타	없음
803	1	2	3	4	5	6	7	8	9	0

조 사 표 첩

지정통계
제 10141호
제 10146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어업조사구 번 호

[illegible][illegible]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통계출장소장	(인)
--------	-----	--------	-----	--------	-----

2000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

조사원 업무일지

1999. 10

조사지역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통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조 사 원 업 무 일 지

검토자 확인(서명)

	1999년 10월 []일 []요일 날씨 []
수행사항	
수행의견	
	1999년 10월 []일 []요일 날씨 []
수행사항	
수행의견	
	1999년 10월 []일 []요일 날씨 []
수행사항	
수행의견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농(어)가 일련번호	조 사 항 목 부 호	항목 수
01		
02		
03		
04		
05		

농(어)가 일련번호	조 사 항 목 부 호	항목 수